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3가단5515880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3. C

4.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재

변 론 종 결 2024. 8. 20.

판 결 선 고 2024. 9. 10.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285,976원 및 그 중 96,596,190원에 대하여 2023. 11. 3.부터 2024. 1. 3.까지는 연 10%,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1) 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C 사이에 체결한 2023. 7. 7.자 전세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A에 2023.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 접수 제122573호로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D 사이에 체결한 2023. 7. 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D은 피고 주식회사 A에 2023.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 접수 제123005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23. 4. 1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E은행 공덕역 지점(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부담하게
될 금전채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자 피고 B은 이 사건 보증약정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 전부를 연대보증하였다.

- 신용보증한도 95,000,000원

- 보증기간 2021. 5. 13.부터 2024. 5. 12.까지

2) 원고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2023. 4. 24.경 소외 은행에게 수출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피고 회사는 2023. 5. 12.경 소외 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피고 회사가 소외 은행에게 대출금연체로 인하여 2023. 8. 22.경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소외 은행의 청구에 따라 원고는 2023. 11. 2. 소외 은행에 원리금 합계 96,596,190원(= 원금 94,988,181원 + 이자 1,608,015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원고가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해 피고 회사와 피고 B의 재산에 가압류 등 법적절차를 취하는데 지출한 대지급금은 5,715,800원인데 그 중 26,014원을 회수하여 그 잔액은 5,689,786원(= 5,715,800원 - 26,014원)이다.

4)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권의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 다음 날부터 연 10%이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02,285,976원(= 대위변제금 96,596,190원 + 대지급금 5,689,786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96,596,19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 날인 2023. 11. 3.부터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인 2024. 1. 3.까지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서 정한 연 10%,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2) 피고 회사는 2023. 7. 7.경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2) (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을 전세권자, 전세금을 1억 5,000만 원, 존속기간을 2025. 7. 10.까지로 하는 전세권(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명의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7. 10. 접수 제122573호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2023. 7. 7.경에는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를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20억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D 명의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7. 11. 접수 제123005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보전채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나,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 역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39560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전세권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인 2023. 11. 2. 원고가 소외 은행에 대위변제금 96,596,190원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전세권 및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각 체결일 이전에 위 구상금채권 성립에 기초가 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전세권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불과 약 50일 후인 2023. 8. 22.경 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세권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대위변제금을 지급함으로써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 피고 회사의 무자력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사단법인 F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회사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전세권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인 2023. 7. 7.경 및 그 이후로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없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23. 7. 7. 이전부터 이미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G 명의로 각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채권최고액 합계액이 30억 원에 이르고, 임의경매가 중복되어 진행중이며, 보증기관인 원고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대위변제도 발생한 사실, 2023. 7. 7. 이후 2개월 20일 정도 지난 2023. 9. 27. 원고의 청구금액 95,000,000원에 대한 가압류 등기를 시작으로, 2023. 11. 29.까지 총 6개의 가압류와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³⁾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시지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전세권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 D은 2023. 7. 7.경 당시 피고 회사가 판매용 재고 화장품과 상사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어 무자력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채무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수익자의 악의 추정

1)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2) 피고 회사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C, D과 사이에 이 사건 전세권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한 것은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더욱 심화시켜 원고를 비롯한 피고 회사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 회사도 이로써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회사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 C, D의 악의는 추정된다(피고 C은 2024. 7. 26.자 참고서면을 통하여 스스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피고 B으로부터 피고 회사가 계속적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자금을 대여해달라고 하여 2019. 6. 24.부터 2023. 4. 13.까지 합계 30억 원이 넘는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회사로부터 2023. 3. 30.까지 13억 원 상당을 변제받았는데, 남은 대여금의 지급을 담보하고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올라 제2, 3호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올라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D의 주장대로라면 30억 원이 넘는 거액의 금전거래가 있었음에도 금전차용증서와 같은 처분문서가 따로 작성되지 않았던 것이 되어 쉽사리 납득이 어려운 점, ② 피고 회사는 의료 제조와 섬유 및 잡화 도소매업에도 종사하고 있어 피고 D과 사이에 거래관계가 다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위 금전내역만으로 차용금의 존재까지 인정하기는 부족한 점, ③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매우 거액이므로 다른 채권자를 해할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D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이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

따라서, 제2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C은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D은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박창우

별지

- 1) 그 중 전세권의 범위는 주거용 125.46㎡(3층 전부)이다.
- 2) 구체적으로는 주거용 125.46㎡(3층 전부)에 관해서이다.
- 3)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취지 참조).